

상지대학교 외국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5.04.16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(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)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외국인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전임 교원 및 정규직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(위원장 포함)은 국제교류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외국인 특별전형 공정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 특별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 특별전형 사전·중간·사후 자체 감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5. 외국인 특별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6. 외국인 특별전형 공정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 내용에 대한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며, 필요에 따라 서면 결의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입학 업무 관계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국제교류팀-480, 2025.04.16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